

2024. 2. 1.(목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2월 1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

녹색에너지과장

임미경

02-2133-3550

에너지관리팀장

박철웅

02-2133-3710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4쪽

관련 누리집
(메뉴)

www.ecosq.or.kr/boiler

서울시,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2180대 교체 지원... 연 최대 44만원 절약

- 저소득·장애인·한부모가족 등 지원, 중위소득 70%이하 다자녀·사회복지시설도 포함
- 표시 가스소비량 70kW 이하 환경표지인증 콘덴싱 가스보일러 대상, 가구당 60만원 지원
- 2월 1일부터 신청접수, 세대원·임차인이 대상인 경우도 지원 가능
- 시, “15년부터 친환경 보일러 98만대 보급, 이산화탄소 18만 7천톤 감축 효과”

저소득층·한부모가정·장애인가구 등 한겨울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친환경 보일러 설치·교체 비용을 지원한다. 올해부터는 일반가정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고 취약계층에 집중하기로 했다. 교체 규모는 총 2,180대이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60만 원이다.

서울시는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신청 접수를 2월 1일 (목)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.

- 교체를 지원하는 모델은 표시 가스 소비량 70^{kW} 이하인 환경표지인증 콘덴싱 가스보일러 5개사 609종 대상이다. 친환경 보일러는 노후보일러 대비 열효율이 약 12% 높아 1대당 연간 최대 44만 원이 절약('23.1월 도시가스 요금 기준)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 (출처:'23. 2. 1. 환경부 보도자료)
 - '환경표지인증'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(기기,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포함)에 비해 제품의 '환경성'을 개선한 제품에 대한 국가 공인인증제도다.
 - 지원모델은 에코스퀘어(www.ecosq.or.kr/boile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한부모가족 등이며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인 다자녀가구(2자녀 이상), 사회복지시설(아동, 노인, 장애인 복지시설 등)이 포함된다.
 - 기존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(교체) 보조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되며, 공공기관 및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도 지원에서 제외된다.
- 신청은 2월 1일(목)부터 온라인(www.ecosq.or.kr/boiler)으로 하거나 관할 자치구 환경관련 부서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. 선착순 마감되며 이미 친환경보일러 교체를 마친 경우는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.
- 신청은 세대주가 대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, 세대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거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. 또 임차인(세대주·세대원)이 지원 대상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및 지원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임대인(주택소유자)이 대리신청 할 수 있다.

-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하거나 공급자(보일러 대리점, 설비업체 등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·판매하는 자) 또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.
-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친환경 보일러 약 98만 대 보급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량은 질소산화물(NO_x) 1,962톤, 이산화탄소(CO₂) 18만7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도시가스 7,791만 m³도 절감했는데 이는 약 13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양이다.
-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“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도시가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”며 “특히 올해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”고 말했다.

《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(' 24.1.) 지원대상 》

-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,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-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
-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(아동)수당 수급자
-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
-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
-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
-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(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)
-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
- ⑨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*인 다자녀(2자녀 이상**)가구 (신규)
 - * 신청일이 속한 달의 '전월 부과보험료'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'보험가입자'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<※ 환경부 업무지침, 예) 4인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합산액 142,350원>
 - **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
- ⑩ 사회복지시설(아동, 노인, 장애인 복지시설 등) (신규)

